

「2026년 운서역 공영주차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운서역 공영주차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24,420,000원(금이천사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 담당자(주차팀 강병주 032-751-7847)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대상 : 운서역 공영주차장(인천 중구 흰바위로 59번길 32)

마. 용역내용 : 시설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시행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07. 14.(화) 20:00 ~ 2026. 07. 21.(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07. 21.(화)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법 제21조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종코드: 4988)**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법」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서 특급, 고급,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소지자에 한해 성능점검 실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중급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 참조
(산업재해를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주차팀 강병주 wnqudrkd1@insiseol.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허합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가격의 1000분의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참가자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사항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 적정임금, 인권존중 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계약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2천만원 미만 제외)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CEMS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 변경, 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행·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전성 검토·견적
-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강
- ◆ ‘**건설물자**’의 구매·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영 제45조제2항)

※ 개별법에 의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바. 문의전화

- 1) 나라장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 용역내용 관련 : 주차팀 강병주(전화 032-751-7847)
- 3)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임진환(전화 032-456-20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4.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 이내 채용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